



보건교육사 제도와 산업보건분야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정혜선

1. 보건교육사 제도 탄생 과정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사업에서 보건교육을 강화시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였다(정혜선, 2008).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교육의 실시, 보건교육의 평가, 보건교육 개발에 대한 규정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교육을 주도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전문가로서 보건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명시된 보

건교육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적인 자격이 되기 이전부터 민간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민간자격의 보건교육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민간기관의 교육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9년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현재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와 '전국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가 보건교육사 양성교육과정을 5기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2001년에 보건교육사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 대학의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김영복 등, 2003), 2007년 4월에 '한국보건교육협의회'를 대한보건협회 보건교육원으로 이동하여 '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2,762명의 민간자격 보건교육사를 배출했다(김영임, 2009).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자격 취득자가 증가하자 보건관리학과 졸업생 및 관련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으려는 수많은 노력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2003년에 의원 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육사라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보건교육사법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으로 변경된 것이다(남철현, 2005).

2. 보건교육사 자격의 종류 및 취득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한 보건교육

사 자격은 3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등급별로 보건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중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필수과목의 경우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의 9과목으로 2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선택과목이란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의 22과목 중 4과목의 10학점을

〈표 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2012년까지만 해당)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4]

이수해야 한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있는데, 1급 시험과목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

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의 3과목이고, 2급 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의 8과목이며, 3급 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

〈표 2〉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보건교육 업무

구분	내용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3.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6조, 제52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6.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7. 모자보건기구	「모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8. 보건 관련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9. 생활체육 지도자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 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personal trainer)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10.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11.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12. 교육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13. 연구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14. 기타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의 4과목이다.

한편 보건교육사 2급의 경우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급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1회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은 2010년 3월 27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4월 9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3급의 경우 5,265명이 응시하여 2,246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42.7 %이었으며, 2급의 경우에는 70명이 응시하여 1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5.7 %이었다. 1급 응시자는 1명이 있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1급 자격 소지자는 배출되지 않았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0).

3.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

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2009. 8. 12)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보건교육 업무를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사업장 및 보건관련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2010년 4월에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보건교육사업의 기획과 프로그램 작성, 보건교육 프로그램 실행, 보건교육방법 및 자료 개발, 보건교육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보건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건강보험에서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교육,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수행,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노인요양 및 수발 서비스에서 건강교육 및 상담 등 이다.

4. 보건교육사 제도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응

보건교육사 제도가 2003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이후 보건교육사가 어떤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보건교육사가 보건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8년에 시험과목, 시험시기,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그 때서야 보건교육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보건교육사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8년 7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법제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보건교육사에 대해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였고, 기존에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도 7월 2일자 의협신문에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에 2010년부터는 한 문장이 추가되어 ‘건강상담과 관리, 보건교육은 보건교육사에게’라고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며, 건강과 보건이라는 개념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증진, 환경과 병인의 개선까지도 의미하는 굉장히 광의적인

것이기에 때문에 의료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비의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제1차 시험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간호계 및 의료계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한 보건교육사 제도를 없앨 수 없으니 시험방법과 시험과목에 간호학과 관련된 과목을 추가하고, 많은 보건의료인이 시험에 용이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보건의료 실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의료기관에서도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서둘러 보건교육사 시험을 준비하였고, 수많은 보건교육사 수험서들이 출판되었으며, 보건교육사 시험대비 동영상 강의, 학원 강의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관련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년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민간 보건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

5. 보건교육사와 산업보건 분야와의 관계

산업보건 분야에서 보건교육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서는 보건교육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보건소, 산업장, 의료기관, 학교, 민간 보건의료 및 복지단체, 보건의료관련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보건교육사는 산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보건 분야에서 수행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업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토대로 수행되는 것이며, 산업보건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관리와 건강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건교육적 방법과 기법만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건교육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

한 수단 중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대도 사업장에 배치된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자 등이 적극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별도의 보건교육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은데 보건교육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법제화된 보건교육사 제도를 바라볼 때 보건교육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분야에서 보건교육사가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김광기 등, 2008), 언젠가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보건교육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향후에 산업보건 분야에서 보건교육사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건교육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존 산업보건 전문 인력과 보건교육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광기, 김건엽, 김영복, 김혜경, 박경옥, 박천만, 이무식(2008). 보건교육사 제도 정립의 방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2), 73-89.
- 김영복, 김혜경, 김명(2003).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강화전략과 보건교육사의 역할.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임(2009). 보건교육사 제도. 한국산업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대한보건교육사협회(2009). 보건교육사의 역할.
- 보건복지부(2008).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2009).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 이민홍(2008). 건강과 보건의 전문가, 보건교육사? 의협신문.
- 정혜선(2008). 보건교육학의 이해. 한국산업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10). 보도자료-2010년도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